

『2018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(나눔의료)』 참여기관 모집 공고

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Medical Korea 국가의료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하고자 「2018년 하반기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(나눔의료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18년 7월 9일

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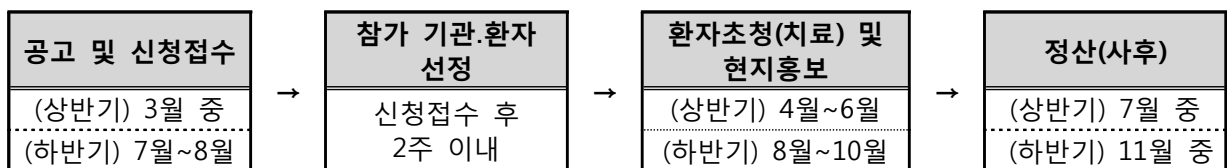
「2018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 사업(나눔의료)」 공고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Medical Korea 국가의료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기여
 - 해당국 홍보채널 동반 초청을 통한 나눔의료 환자 치료 사례 현지 홍보 글로벌 마케팅 강화
- (내용) 나눔의료 사업 수행을 통한 Medical Korea 해외 홍보
 - 주요국가 대상*, 현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발굴하여 치료하고 해당국 홍보사** 초청을 통해 홍보물 제작 및 현지 송출(게재)
 - * 러시아 및 CIS국가,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, 중동 등
 - ** 홍보사(방송사, 신문사, 매거진 등) 또는 관계의료인(초청환자 관련 진료과 현지 의사 및 치과의사)
 - 나눔의료 사업 참가 기관 및 환자 치료사례 홍보
 - *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(www.visitmedicalkorea.com), 기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활용

□ 사업 일정

- 연 중 2회 실시(상·하반기)



□ 추진 체계



- (사업공모) 의료기관·유치업체·유관기관(지자체 등) 대상 공고
 - * 유치업체 및 유관기관은 치료 의료기관 선정 후 신청
- (사업기획) 신청기관에서 해외환자유치 주요국가 대상, 현지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여 나눔의료 사업 신청
 -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환자(사연, 진료과정 등) 선정
 - 환자와 동반초청되는 현지 홍보사(방송사, 신문사, 매거진 등) 또는 관계 의료인(의사·치과의사) 선정
 - 치료 및 홍보계획을 포함한 참가 신청서(첨부 1) 제출
- (기관선정) 신청 환자의 적합성, 의료기관의 전문성, 현지 홍보사 또는 의료인 초청을 통한 홍보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의
 - (신청기관) 기관의 전문성 및 환자 치료의 책임감, 해외환자 유치 실적, 해외환자 무료시술 및 기타 포상 실적 등
 - (환자) 국적(해외환자유치 주요국가) 및 지원의 시급성(중증도, 가정환경) 등
 - (동반초청자) 홍보사 또는 관계 의료인의 홍보효과
 - (홍보사) 현지 홍보매체의 영향력(채널 전파력), 홍보콘텐츠의 파급력(환자의 사연 및 치료과정의 스토리텔링)
 - (관계 의료인) 환자 귀국 후 현지 Post-care를 지원할 의료인으로 현지 홍보물 동반 출현 및 추후 환자송출 채널 역할 여부
 - * 국내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·수료한 연수생 포함
- (치료 및 홍보) 환자의 사연과 연계한 신청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과정 및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·현지 송출(게재)

□ 지원 내용

- (여비) 환자(보호자 포함) 및 해외 홍보사 또는 의사·치과의사의 왕복항공료, 국내 체재비 지원(실비)
 - * 환자의 치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전액부담
 - (항공료)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료 지원
 - (체재비) 국내 체류 기간 동안의 식사, 관광, 교통비, 통역비 지원
 - * [붙임1] '여비 사용 지침' 참고
- (홍보) 나눔의료 사업 참가 기관 및 환자 치료사례 홍보
 - 해외 홍보사 제작물 등 통합의료관광 웹사이트(visitmedicalkorea.com) 게재
 - 현지국가의 나눔의료 홍보채널 연계·지원
- (기타) 원활한 나눔의료 사업 수행을 위한 통역 및 비자 수속 지원
 - (통역) 필요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한 통역인력 지원 요청
 - (비자) 원활한 사증발급을 위한 행정 지원(관계기관 협조 공문 발송 등)
 - * 입국 전 사증발급 비용 지원 불가, 사증 연장비용은 체재비 내에서 사용 가능

□ 신청 방법(상반기)

- (신청기간) '18.7.9(월) ~ '18.7.31(화)
 - * G2G 사업·해외홍보대사연계·환자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한 상황의 경우 신청기간 외 수시접수 가능(담당자 문의 요망)
- (제출서류) '첨부 1'(① 2018년 Medical Korea 나눔의료 참가신청서,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,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)
 - * (선택) 최근 3개년 해외 환자 무료 진료 실적 및 봉사 관련 포상 수상 실적 증빙 등
- (제출방법) 이메일 :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사업팀 하지봉 연구원
(☒ medicalcharity@khidi.or.kr, ☎ 043-713-8078)

붙임1 여비 사용 지침 [2018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]

□ 여비 지원 사항

- (항공료) 왕복 항공권(환자, 현지 언론사, 의사·치과의사 공통)
- (체재비) 국내 체류 기간 동안의 식사, 관광, 교통, 통역비 등

< 여비 지원 내역 >

구분	비목	세목	내역	사용범위												
환자 및 보호자	항공료	항공 및 현지교통비	항공권	이코노미석 실비 사용												
			해외 현지 교통비	‘지택→공항’의 현지 교통비 사용 가능												
	체재비	숙박·식사	국내 숙박 및 식비	< 지원 금액 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동반(환자,보호자)</th> <th>개인(환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~2주</td> <td>90,000원/1일</td> <td>50,000원/1일</td> </tr> <tr> <td>3~4주</td> <td>40,000원/1일</td> <td>30,000원/1일</td> </tr> <tr> <td>5~12주</td> <td>10,000원/1일</td> <td>10,000원/1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산정된 체재비 내에서 1일 사용 한도 없음	구분	동반(환자,보호자)	개인(환자)	1~2주	90,000원/1일	50,000원/1일	3~4주	40,000원/1일	30,000원/1일	5~12주	10,000원/1일	10,000원/1일
		구분	동반(환자,보호자)		개인(환자)											
1~2주	90,000원/1일	50,000원/1일														
3~4주	40,000원/1일	30,000원/1일														
5~12주	10,000원/1일	10,000원/1일														
관광	국내 관광비용															
교통	·공항 송영 ·기타 국내 교통비 등															
생필품 및 기타	·생활용품 구입비 ·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 이외의 진료비(감기 등) ·통역비															
해외 홍보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공통 (2인)	항공료	항공료	항공권	이코노미석 실비 사용												
	체재비	숙박·식사	국내 숙박 및 식비	< 지원 금액 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최대지원액(1인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숙박비</td> <td>100,000원/1박</td> <td rowspan="2">최대 4박5일</td> </tr> <tr> <td>식비</td> <td>50,000원/1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2인까지 지원 가능	구분	최대지원액(1인)	비고	숙박비	100,000원/1박	최대 4박5일	식비	50,000원/1일				
구분		최대지원액(1인)	비고													
숙박비	100,000원/1박	최대 4박5일														
식비	50,000원/1일															
	교통	·공항 송영 ·기타 홍보물 제작을 위한 국내 교통비 등	실비 지원 (코리아투어패스카드 사용 등)													

* 필요시 원활한 환자 치료와 안전을 위해 동행한 사업 참여기관 직원(최대2인)의 식비, 관광, 교통비 지원

□ 여비 지원 비목별 계상 기준

<p>1. 집행원칙(방법) : 모든 여비는 사업 참가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*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증빙 철저</p> <p>2. 정산원칙(방법) : 모든 여비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, 회계법인의 사업비 정산 위탁 수행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·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, 사업 결과보고서, 해외 방영(게재) 홍보물, 정산 서류 제출 * 정산계좌는 신청기관명과 예금주가 일치하는 계좌로 일원화</p> <p>3. 기타 해당되지 않은 비목은 사업수행기관 자기비용으로 사용</p> <p>4. 본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,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규정은 상위 법률 및 규정(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지침, 공무원여비규정 등)에 의하여야 함 * 다만, 적용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전 문의 후 집행</p>	
여비정산 불인정 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류가 포함된 식사비(주류 및 안주류 일체 불가) ◦ 불편성이 벗어난 생활용품 구입 ◦ 일괄구매로 인하여 구입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◦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고, 대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◦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◦ 해외 현지 홍보물 송출(게재)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

○ 항공료

비목	항공료
세목	항공 및 현지 교통비
사용용도 및 계상기준	
【사용용도】	
1. (환자 및 보호자) 치료를 위한 한국 입·출국 왕복 항공료 * 거주지와 공항과의 거리,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해외 현지 교통비 지급 가능	
2. (해외언론사) 한국의료 홍보물 제작을 위한 한국 입·출국 왕복항공료	
3. (의사·치과의사) 환자 귀국 후 현지 케어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국 입·출국 왕복 항공료	
【계상기준】	
1. (환자 및 보호자) 현지 교통비 및 항공권 이코노미석 실비	
2. (해외언론사, 의사·치과의사) 항공권 이코노미석 실비	
【정산증빙】	
1. (공통) 여권사본, E-ticket, 항공료 인보이스, 입금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, 통장사본	

○ 체재비

비목	체재비			
세목	숙박, 식사, 관광, 교통, 생필품 및 기타			
사용용도 및 계상기준				
【사용용도】				
1. (환자 및 보호자) 치료기간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체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숙박·식사 - 국내 숙박 및 식비(주류 및 안주류 일체 불가) · 관광 - 국내 체류기간 중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(고궁, 테마파크 입장료 등) · 교통 - 공항 송영, 기타 교통수단 이용 비용 · 생필품 및 기타 - 필수 생활용품 구입(기저귀, 의류, 신발 등),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 이외의 질환 진료비 및 처방약(감기 등), 통역비 				
2. (해외언론사, 의사·치과의사) 홍보물 제작 및 환자 치료를 위한 국내 체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숙박·식사 - 국내 숙박 및 식비 · 교통 - 공항 송영, 환자 치료, 기타 홍보물 제작을 위한 국내 교통비 등 				
【계상기준】				
1. (환자 및 보호자) 체재 기간에 따른 지원 기준 금액 내 사용(실비정산, 최대 12주)				
체재 기간	환자 및 보호자(2인)	환자(1인)		
1~2주	90,000원/1일	50,000원/1일		
3~4주	40,000원/1일	30,000원/1일		
5~12주	10,000원/1일	10,000원/1일		
* 2018년 최저 생계비 기준(1,708,253원/월)에 상응하는 체재비 산정 (4주 이상 체제 환자는 의료기관 입원으로 판단하여 최소 금액 산정)				
예시> 동반입국 후 5주 체류 시	1~2주 기준 (90,000원x14일)	3~4주 기준 (40,000원x14일)	5~12주 기준 (10,000원x7일)	= 총 지원금액 1,890,000원
* 체류기간 동안 산정된 체재비 내에서 1일 한도없이 사용가능				
2. (해외언론사, 의사·치과의사) 최대 4박5일, 2인까지 지원 기준 금액 내 사용(실비정산)				
구분	최대지원액(1인)	비고		
숙박비	100,000원/1박	최대 4박5일		
식비	50,000원/1일			
교통비	실비정산	코리아투어패스카드 사용 등		
예) 2인, 4박5일 체류시 : 숙박비(100,000원x2인x4박) + 식비(50,000원x2인x5일) = 1,300,000원				
【정산증빙】				
1. (공통) 구매내역서 작성(별첨1, 결제수단 명시), 영수증 사본(모든 항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이나 개인카드 사용 시 부서장 서명 필요 * 모든 항목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 첨부, 영수증 분실 시 정산 불가 				